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1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63755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한 ① 취득세 360,065,220원과 지방교육세 20,575,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② 취득세 377,357,960원과 지방세 21,563,3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1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는 2013. 6. 28. [redacted]공사로부터 B블록(이하 'C단지'라 한다) 및 D블록(이하 'E단지'라 하고, C단지와 E단지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123,564,060,000원에 매수했다.

나.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설

원고는 2015. 2. 12.부터 C단지 위에는 545세대 규모인 아파트(이하 'C단지 아파트'라 한다), E단지 위에는 532세대 규모인 아파트(이하 'E단지 아파트'라 하고, C단지 아파트와 E단지 아파트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건설하기 시작했고, 2017. 9. 14. [redacte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

1) 원고는 2017. 11.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구분	과세표준(원)	취득세(원)	지방교육세(원)	합계(원)
C단지	53,497,028,511	1,497,916,790	85,595,240	1,583,512,030
E단지	50,867,638,105	1,424,293,860	81,388,220	1,505,682,080

2) 한편, 2019. 6.경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위 취득세 등은 아래와 같이 감액되었다.

구분	과세표준(원)	취득세(원)	지방교육세(원)	합계(원)
C단지	53,497,028,511	1,495,198,460	85,439,910	1,580,638,370
E단지	50,867,638,105	1,422,625,480	81,292,890	1,503,918,370

라. 이 사건 처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10

1)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2) 그러나 피고는 2019. 11. 15. '원고는 2014. 12. 31. 이후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제도는 2014. 12. 31. 폐지되기 전 약 20년 동안 유지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14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을 신뢰하고 2014. 12. 31. 이전 이미 이 사건 각 아파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확보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감리용역을 체결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10

다.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면제요건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이 사건 감면조항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75호)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종기(이하 '일몰기한'이라 한다)인 '2014. 12. 31.'이 지났지만, 그 후 일몰기한이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려면, 면제대상이 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2014. 12. 31.까지 성립해야 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10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7. 9. 14. [redacte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실상 사용일이 위 날짜보다 빠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2017. 9. 14.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2017. 9. 14. 성립한다.

다) 원고는 일몰기한인 2014. 12. 31. 전에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이 사건 각 토지 취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감리용역계약 체결 등)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관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 개정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위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납세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납세자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10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은 일몰기한을 2014. 12. 31.로 명시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특례가 한시적인 조치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몰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2013. 6. 28.에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했고, 일몰기한이 지난 2015. 2. 12.에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한 원고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특례가 곧 종료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일몰기한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에 따른 것일 뿐이고, 향후에도 다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일몰기한이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를 보호해 주는 경우, 입법자가 일몰기한의 종료에 즈음하여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취득세 면제의 특례를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되는 종기를 2014. 12. 31.로 명시하여 2014. 1. 1. 개정된 뒤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라) 원고는 일몰기한 이후인 2017. 11.경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사건 각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마) 원고는 일몰기한 이후인 2015. 2. 12.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착공했을 뿐이고, 설령 원고가 그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일몰기한 이후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10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10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10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